「평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❍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(안 제2조)

❍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(안 제3조)

❍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등(안 제4조)

❍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❍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생발전과 자생적·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,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.

❍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상권 내몰림이 우려되는 지역은 ‘지역상생구역’으로, 쇠퇴한 구도심 등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‘자율상권구역’으로 구분하여 상인·임대인 등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 법률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음.

❍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지정·운영되는 지역상생구역은 없으나, 2025년도에 강릉시 명주·남문동 자율상권구역, 홍천군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, 태백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 등 3개 자율상권구역이 지정·운영되고 있음.

❍ 이번 제정안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,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와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